

## 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

1. 투자신탁의 명칭 : 이스트스프링 코리아리더스 20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  
(변경 후 명칭: 이스트스프링 코리아리더스 2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)
2. 집합투자규약 변경 사유 :
  - 모자형으로 전환하여 해당 명칭 및 투자대상자산, 취득한도, 투자제한 등 변경
  - 모자펀드간 수탁사 상이할 경우 수탁사 보수 분배관련 조항 추가
3. 집합투자규약 변경시행일 : 2017 년 3 월 30 일
4. 집합투자규약 변경 주요 내용 :

변경전	변경후
펀드명칭	
이스트스프링 코리아리더스20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	이스트스프링 코리아리더스2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제2조(용어의 정의)	
1. ~2. <생략> 3. "투자신탁"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·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 4. "증권투자신탁"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증권(법시행령 제240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관련 주식 또는 채권 및 특별자산을 제외하며, 제외대상 자산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.)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. 5. ~8. < 생략 > 추가	1. ~2. <현행과 동일> 3. "투자신탁"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·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, 이 신탁계약에서는 <u>"이스트스프링 코리아리더스2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"을 말한다.</u> 4. <u>"모투자신탁"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말한다.</u> 5. ~9. <현행과 동일> 10. <u>"모자형" 이라 함은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로서 자투자 신탁이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외의 다른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것과 자투자신탁 외의 자가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자투자신탁과 모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한</u>

	투자신탁을 말한다.
제3조(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)	
<p>① 투자신탁의 명칭은 "이스트스프링 코리아리더스20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"라 한다.</p> <p>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투자신탁</li> <li>2. 증권(혼합채권형)</li> <li>3. 개방형</li> <li>4. 추가형</li> <li>5. 종류형</li> </ol> <p>&lt;추가&gt;</p> <p>이하 &lt;생략&gt;</p>	<p>①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"<u>이스트스프링 코리아리더스20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"라 한다.</p> <p>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투자신탁</li> <li>2. 증권(혼합채권형)</li> <li>3. 개방형</li> <li>4. 추가형</li> <li>5. 모자형</li> <li>6. 종류형</li> </ol> <p>③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업종일등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(이하 "주식증권모투자신탁"이라 한다)</u></li> <li>2. <u>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제1호[채권](이하 "채권증권모투자신탁"이라 한다)</u></li> <li>3. <u>이스트스프링 코리아리더스20 증권모투자신탁[채권혼합](이하 "채권혼합증권모투자신탁"이라 한다)</u></li> </ol> <p>이하 &lt;기존과 동일&gt;</p>
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	
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·해지, 투자신탁재산의 운용·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②~③&lt; 생략 &gt;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·해지, 투자신탁재산의 운용·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<u>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행사한다.</u></p> <p>②~③&lt;현행과 같음&gt;</p>
제16조(투자목적)	
<p>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80% 이하를 투자하고 국내 주식에 신탁재산의 20% 이하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수익자는 국내 채권과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. 채권은 발행자의 부도,</p>	<p><u>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채권증권모투자신탁과 채권혼합증권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60% 이상을 투자하고 주식증권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20% 이하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이때</u></p>

<p>채무불이행, 파산, 신용등급 하락 발생에 따른 채무불이행위험과 시중실세금리의 등락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, 주식은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.</p>	<p>채권증권모투자신탁은 국내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, 채권혼합증권모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80%이하를 투자하고 국내주식에 신탁재산의 20%이하를 투자한다. 또한 주식증권모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므로 수익자는 국내 채권과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. 채권은 발행자의 부도, 채무불이행, 파산, 신용등급 하락 발생에 따른 채무불이행위험과 시중실세금리의 등락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, 주식은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.</p>
--	---

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

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)(이하 "주식"이라 한다)</p> <p>2.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3.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제3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</p> <p>2. 법 시행령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단기대출(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)</p> <p>2. 금융기관에의 예치(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)</p> <p>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)</p>
--	---

<p>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</p> <p>4. 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(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2- 이상이어야 한다) (이하 "어음"이라 한다)</p> <p>5.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, 개별주권, 금리 관련 장내파생상품(이하 "주식및채권관련 파생상품"이라 한다)</p> <p>6.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(이하 "집합투자증권등"이라 한다)</p> <p>7. 환매조건부채권 매도</p> <p>8.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</p> <p>9. 증권의 차입</p> <p>10. 법 시행령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단기대출(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)</p> <p>2. 금융기관에의 예치(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)</p> <p>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)</p>	
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	
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한다.</p> <p>2.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 이하로 한다.</p> <p>3.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</p>	<p><u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u></p> <p><u>1. 제3조제3항제1호 주식증권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한다.</u></p> <p><u>2.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채권증권모투자신탁과 채권혼합증권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투자신탁</u></p>

<p>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</p> <p>4.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</p> <p>5. 주식및채권관련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로 한다.</p> <p>6.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 이하로 한다.</p> <p>7.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% 이하로 한다.</p> <p>8.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% 이하로 한다.</p> <p>9.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한다.</p>	<p>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</p> <p>3. <u>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현금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로 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자산총액의 40% 이하의 범위 내에서 10%를 초과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9조(운용 및 투자제한)</p>	
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. 다만,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.</p> <p>가.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</p> <p>나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)</p> <p>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주식과 주식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가. 국채증권,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</p>	<p><u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1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<u>이해관계인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</u></p> <p>가. <u>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</u></p> <p>나. <u>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)</u></p>

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까지 투자하는 경우

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제2호가목의 것은 제외한다),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[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(이하“기업어음증권”이라고 한다)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],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·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.)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

다.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)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까지 투자하는 경우.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주식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.

3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

<p>발행한 주식 총수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 <p>4.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 <p>5. 주식및채권관련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 <p>6.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 <p>7. 법 시행령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</p> <p>8.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%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 <p>9.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 <p>10.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 <p>11.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	
<p>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p>	
<p>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<u>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</u></p>

<p>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</p> <p>2.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</p> <p>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</p> <p>4.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,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11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③ 제19조제2호 본문,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	<p>2.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</p> <p>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</p> <p>4.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
제25-1조(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)	
<신규추가>	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가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.</p>
제26-1조(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)	
<신규추가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위하여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해야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현금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</p>
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
① ~③ < 생략 >	① ~③ < 현행과 같음 >



<p>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. <u>다만,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35조(상환금 등의 지급)</p>	
<p>① &lt; 생략 &gt;         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.          ③ &lt; 생략 &gt;</p>	<p>① &lt; 현행과 같음 &gt;         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<u>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u>          ③ &lt; 현행과 같음 &gt;</p>
<p>제37조(수익자총회)</p>	
<p>① ~⑨ &lt; 생략 &gt;          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, 제6항,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“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”는 “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”로 본다.          &lt;신규추가&gt;</p>	<p>② ~⑨ &lt; 현행과 같음 &gt;          ⑩ <u>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,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, 자산운용회사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</u>          ⑪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, 제6항,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“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”는 “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”로 본다.</p>
<p>제39-1조(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)</p>	
<p>&lt;신규추가&gt;</p>	<p><u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할 경우,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보수 중 50%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“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”라 한다)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.</u></p>
<p>제43조(신탁계약의 변경)</p>	
<p>① ~② &lt; 현행과 동일 &gt;          ③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제4항의 경우에는</p>	<p>① ~② &lt; 현행과 동일 &gt;          ③ <u>수익자가 이 신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(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49조제1항에 의하여 게시된 날 또는 통보된 날을 포함)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</u></p>

<p>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④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.&lt;ㄷ</p>	<p><u>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
<p>제45조(투자신탁의 해지)</p>	
<p>① ~②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 <p>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5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.</p> <p>⑤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</p>	<p>① ~②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③<u>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5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<u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</u></p>
<p>제51조(손해배상책임)</p>	
<p>①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②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·일반사무관리회사·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(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) 및 채권평가회사(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)와 함께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</p>	<p>①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②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<u>자투자신탁</u> <u>수익증권의</u> 판매회사·일반사무관리회사·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(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) 및 채권평가회사(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)와 함께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</p>